

2006년도 기금 운용 성과 분석보고(안)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1). 2007. 7. 3 : 사천시장 제출
- 2). 2007. 7. 3 : 총무,산업건설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52호)
- 3). 2007. 9. 17 : 제1차 총무·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및 예비 심사
- 4). 2007. 9. 18 :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

2. 제안설명 요지(체육지원단장 박태정,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, 보건위생과장 정현식)

1)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 제14조,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기준(행자부 예규 제237호)의 규정에 의하여 매 3년마다 성과분석을 하도록 되어있어 금번 체육진흥기금, 재난관리기금, 식품진흥기금을 결산코자함.

2). 주요내용

가. 체육진흥기금 성과 분석

- 운용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2006년도 운용현황		2006년도말 현 재 액	2007년 운용계획			2007년말 추정액	비 고
수 입	지 출		수 입	지 출	증 감		
1,088	34	1,054	37	37	—	1,054	

■ 설치근거 : 사천시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조례

■ 설치목적 : 사천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 도모

나. 재난관리기금 성과 분석

○ 운용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2006년도 운용현황		2006년도말 현 재 액	2007년 운용계획			2007년말 추정액	비 고
수 입	지 출		수 입	지 출	증 감		
945	250	695	242	291	△49	646	

■ 설치근거 :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.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

■ 설치목적 : 재난의 예방. 수습. 복구 등 재난위험요인 해소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함

다. 식품진흥기금 성과 분석

○ 운용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2006년도 운용현황		2006년도말 현 재 액	2007년 운용계획			2007년말 추정액	비 고
수 입	지 출		수 입	지 출	증 감		
132	54	78	39	69	△30	48	

■ 설치근거 : 식품위생법.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

■ 설치목적 :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 도모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경호)

- 체육진흥기금은 시 체육의 활성화와 체육진흥에 사용되는 기금으로, 사천시 체육진흥사업 및 우수선수육성 지원사업, 도민체육대회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'06년도 기금운용은 1,088백만원에서 34백만원이 지출되고 1,054백만원의 기금이 이월되어 큰 변동은 없는 상태이나, 도체에 지원되는 시비와 기금이 중복됨으로 도체경비는 별도 예산으로 반영 추진하고 기금은 우수선수 육성에 보다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.
-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1/100에 해당하는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재난의 예방, 수습, 복구 등 재난위험 요인 해소 및 응급조치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, '06년도 945백만원에서 250백만원이 지출되고 695백만원이 이월되어 예측 불허의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재난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.
-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2006년도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 등을 수행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, '06년도 132백만원에서 54백만원을 지출하고 78백만원이 이월된 상태로 기금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기금조성에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 특히 기금사용에 있어 비위생적인 업소에 대한 지원등 기금 운용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됨.
- 상기 기금의 운용에 있어 상급기관의 감사시 지적 사항이 없고 사용목적에

부합되게 운용되고 있어 기금의 준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,

- 또한 기금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공개하므로 인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제고됨과 아울러,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코자함.

4. 주요질의 및 답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함

7. 소수의견 : 없음